

의안번호	2212083
의 퇴 인	추경호 의원
회 답 일	2025.08.19.
추계번호	25E4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3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6년 2조 1,297억원, 2028년 2조 5,181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6조 9,607억원(연평균 2조 3,2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는 2026~2028년 총 4,226억원(연평균 1,409억원) 감소 예상
 -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는 2026~2028년 총 1조 1,672억원(연평균 3,891억원) 감소 예상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는 2026~2028년 총 5조 3,710억원(연평균 1조 7,903억원) 감소 예상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부가가치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5호)	-1,279	-1,404	-1,543	-4,226	-1,409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3,306	-3,860	-4,506	-11,672	-3,89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안 제108조)	-16,712	-17,866	-19,132	-53,710	-17,903
합계	-21,297	-23,130	-25,181	-69,607	-23,202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5호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2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9호의2	-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3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5.12.31. → (개정안) 2028.12.31. - 공제율: 현행 유지(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5호	○	-
2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9호의2	○	-
3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항목별 전제는 다음과 같음

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되, 추계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대금이 최근 추세에 따라 증감할 것으로 전제
 -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 거래 시장 등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책의 영향은 감안하지 않음

나.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동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되, 최근의 신규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증감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각각의 ‘취득가액 × 공제율’로 산출되는 구조임
 -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
-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되,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하여 반영함
 - 조세지출액(징수 기준)¹⁾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 세부 항목을 구분할 수 없음
 - 공제 대상인 취득가액(신고 기준)²⁾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해 공제액을 추정하고 각 비율을 산출해 반영함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³⁾가 적용되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동 추계에서는 한도를 상회하는 신고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의 최근 증감률 추세를 반영

1)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

3)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동 제도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20년 1,338억원에서 2022년 87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965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

[표 2]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 2017~2023년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	545	650	1,001	1,338	1,267	876	965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9.8%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은 2020년 1조 3,385억원에서 2022년 8,756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23년 9,688억원, 2024년 1조 641억원으로 증가⁴⁾

[표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 2017~2024년

(단위: 억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래금액	5,503	10,509	10,831	13,385	12,666	8,756	9,688	10,641
전년대비 증감률	169.6	91.0	3.1	23.6	-5.4	-30.9	10.6	9.8

자료: 환경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가운데, 배출권 가격은 2020년 이후 누적된 과잉할당·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전 대비 하락한 상황임(관계부처 합동,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2023.9.)

[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량 및 평균가격 추이: 2017~2024년

(단위: 만톤, 원/톤)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래량	2,626	4,751	3,808	4,401	5,472	3,914	8,994	11,124
평균가격	21,131	22,237	29,126	29,026	19,709	20,633	9,987	9,245

주: 1. 거래량은 장내외 거래 합산(KAU, KCU, KOC 중합) 기준이며, 평균가격은 장내에서 거래된 KAU 기준(거래대금/거래량)

자료: 환경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279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4,226억원(연평균 1,40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추계기간 세수효과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금액의 증감률(2024년, 9.8%)과 동일한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3,157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069억원 감소 예상

[표 4]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5호)	-1,279	-1,404	-1,543	-4,226	-1,409
- 국세(74.7%)	-955	-1,049	-1,152	-3,157	-1,052
- 지방소비세(25.3%)	-324	-355	-390	-1,069	-356

나.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2019년 437억원에서 2024년 2,078억원으로 연평균 36.6% 증가하는 추세

[표 5] 전기·수소 시내버스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조세지출액: 2019~2024년
(단위: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망)	연평균 증감률
조세지출액	437	337	409	752	1,304	2,078	36.6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은 면제 대상인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최근 증감률(16.7%)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

- 2023년에 일부 버스(전기·수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⁵⁾)의 연식별 차량 대수가 집계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2022~2023년 공급대수를 추정
 - 2022년 신규 버스(2023년 기준 차령 1~2년) 대수는 1,774대
 - 2023년 신규 버스(2023년 기준 차령 1년 미만) 대수는 2,071대로, 전년대비 16.7% 증가

[표 6] 신규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추이: 2022~2023년

(단위: 대, %)

	2022년 ¹⁾	2023년 ²⁾	전년대비 증감률
전기·수소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신규)	1,774	2,071	16.7

주: 1) 2022년 신규 버스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2023년 기준 차령이 1~2년인 버스 대수로 추정함

2) 2023년 신규 버스는 2023년 기준 차령이 1년 미만인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집계됨

1. 마을버스는 집계되지 않아 포함하지 않음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306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1조 1,672억원(연평균 3,89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8,719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2,953억원 감소 예상

[표 7]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전기 시내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3,306	-3,860	-4,506	-11,672	-3,891
- 국세(74.7%)	-2,470	-2,883	-3,366	-8,719	-2,906
- 지방소비세(25.3%)	-836	-976	-1,140	-2,953	-984

5) 마을버스는 집계되지 않음

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 최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조세지출액은 2021년 1조 1,760억원, 2023년 1조 3,853억원 수준
 - 조세지출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금액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

[표 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E)	11,760	14,409	13,853

주: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자료: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021~2023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은 연평균 6.0% 감소하고,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연평균 8.4% 증가하는 추세

[표 9]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신고 기준): 2021~2023년
(단위: 억원, %)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a)	80,672	83,518	71,323	-6.0
중고자동차 취득가액(b)	105,471	123,188	124,045	8.4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취득가액 자료를 바탕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
 - 취득가액 기준으로 추정 시 2023년의 경우 전체 매입세액공제액 중에서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액은 15.6%, 중고자동차의 공제액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항목별 공제액은 '취득가액 × 공제율'로 산출

[표 10]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비율 추정(신고 기준): 2021~2023년
(단위: 억원, %)

		2021	2022	2023
재활용 폐자원	공제액 ($A=a \times \text{공제율 } 3/103$)	2,350	2,433	2,077
	전체 대비 비율 ($\alpha=A/(A+B)$)	19.7	17.8	15.6
중고 자동차	공제액 ($B=b \times \text{공제율 } 10/110$)	9,588	11,199	11,277
	전체 대비 비율 ($\beta=B/(A+B)$)	80.3	82.2	84.4

주: 취득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공제액은 징수 기준의 최종 조세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항목별 공제액 비율(추정)을 반영 시, 2023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은 재활용폐자원 2,155억원, 중고자동차 1조 1,698억원으로 추정
 - 항목별 조세지출액은 ‘전체 조세지출액 × 각 공제액 비율(추정치)’로 산출

[표 1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 추정(항목별): 2021~2023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조세지출액(E)	11,760	14,409	13,853
- 재활용폐자원($E \times \alpha$)	2,315	2,571	2,155
- 중고자동차($E \times \beta$)	9,445	11,838	11,698

-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1조 6,712억원 등으로 추정
 - 항목별로 2023년 조세지출 추정치에 최근의 취득가액 증감률을 반영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합산함
 - 항목별 취득가액의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12]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시 조세지출액(추정):
2024~2028년

(단위: 억원)

	2024	2025	2026	2027	2028
재활용 폐자원	2,026	1,905	1,791	1,684	1,584
중고자동차	12,686	13,758	14,921	16,181	17,548
합계	14,713	15,663	16,712	17,866	19,132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6년 1조 6,712억원 등 2026~2028년 3년간 총 5조 3,710억원(연평균 1조 7,90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6~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4조 121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조 3,589억원 감소 예상

[표 1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누적	연평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	-16,712	-17,866	-19,132	-53,710	-17,903
- 국세(74.7%)	-12,484	-13,346	-14,292	-40,121	-13,374
- 지방소비세(25.3%)	-4,228	-4,520	-4,840	-13,589	-4,530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